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세부사업명	축산물수급관리				세목	민간경상보조		
내역사업명	송아지생산안정 지원				예산 (백만원)	700		
사업목적	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,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							
사업 주요내용	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 수수료 지급 등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「축산법」제32조(송아지생산안정사업)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							
지원한도	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 1	00 지방비		융자	7	가부 담		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구 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	2016년 2,468 1,318 575 575	2017년 1,850 700 575 575	1,i	18년 850 00 75 75	(단위: 백만원) 2019년 1,850 700 575 575	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지	ŀ	연락처		
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			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		_	44-201-2332 2-2080-6553		
신청시기	정기(매년 5.31일까지)			사업시행	기관	농협경제지주	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사업시행지침서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-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3. 지워대상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- 보전금
-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
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
- 관리수수료 등(축발기금 부담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
-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(통계청 가축동향)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

<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>

	확대단계	적정단계	위험단계	초과단계
가임암소두수	90만마리 미만	90~100만 미만	100~110만 미만	110만 이상
최대보전액(천원)	400	300	100	0

○ 안정기준가격 : 1,850천원/마리(6~7개월령)
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- 계약신청 기간 : 매년 1. 1. ~ 5. 31.
-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
 - 농협경제지주, 생산자단체, 지자체 등에 시달
- 사업시행기관과 시장·군수는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
 - * 사업시행기관은 농협(지역 농축협 등), 생산자단체(한우협동조합, 한우협회)를 말함

2. 사업자 선정단계

-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(10천원)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(해당사업년도내)
 - *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,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
- 한우협동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해당 지자체(시・군)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(지역 농・축협 제외)
- 사업시행기관은 농가의 사업참여 신청시 계약을 체결(농가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)
-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, 당해연도 1.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
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- 사업 참여 기간 : 매년 1. 1(계약일)~ 12. 31(1년간)
-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
- 농협경제지주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·군별, 재원별 구분 계리
- 농협경제지주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
-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,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
-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·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,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·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

-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매 기(2개월)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,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
 - □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・공고
 -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매기(2개월)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, 시 • 도(시장 • 군수),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
 - ・농・축・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~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・수 송아지 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
-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
- 자금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~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
-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·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·군에 통보
- 시·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
-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
 - □ 보전금 소요액 산출
 - 총소요액 = 총지급두수 × 두당보전금지급액
 - ·정부부담액 = 총 소요액 농가·지자체 부담금 적립액
 - *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ㆍ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
 - •시 •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
-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
-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·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·군별 소요자금을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에 배정하고 시장·군수에 통보

□ 보전금 지급조건

- •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(귀표부착 완료)가 만 6개 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(2개월 단위)의 6~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
- □ 보전금 지급제한
 - 전쟁,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
 -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,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
 - •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(De-minimis)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지급

- 사업관리 수수료
-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
 - •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,500원,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- 시장・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
-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
- 시·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(계약신청기간 만료 후, 매년 11.30일 이후)
-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·군수 및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에게 통보
-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,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(반기)
-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
-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
- 계약신청기간 이후 :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
- 점검 사항 : 농가 계약관리 점검, 자금 관리 전반(농협경제지주 납입 등)
 - *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(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)이 있을 경우,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
-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
-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
-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(서)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
-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
- · 단,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

-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
-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(기존 부담금 포함)을 총괄 관리
 - ·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(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 설치),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경제지주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
 - 시·군별,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
- 안정사업자금의 사용·운용
-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
 - ·시장·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
-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
-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
-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「축산법」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(축산경제대표이사)는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·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(시·도,시·군,사업시행기관)에 통보

《사업시행체계》

사 업 안 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•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• 안정제사업내용 • 계약신청기간 5개월 송아지 · 안정기준가격 • 계약자부담금납부 ・생후 30일이내 사업 • 계약자부담금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보전금 지급 •기별 송아지 평균 · 시군별 소요보전금 • 사업시행기관은 신고 거래가격 고시(공고) 배정(농식품부→ 접수 후 1개월 이내 농협경제지주) ・생후 6~7개월령 생산 확인 : 이력제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· 사업시행기관은 농협 시스템을 이용하여 〈보전금 지급 기준에 경제지주에서 배정 생산 확인 및 전산 따라 정한 안정기준 받은 계약자 통장에 등록

가격 일때

보전금 이체